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5

발의연월일: 2024. 6. 27.

발 의 자:한정애·장철민·김준형

이학영 · 진선미 · 박지원

송옥주 · 부승찬 · 이병진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소득·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 득월액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재산보험료부과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월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 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재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 보험료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식에 따라 부과 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부 산정방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고 국민에게 알 릴 필요가 있음.

따라서 소득월액 및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방법은 대통령 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71조 및 제72조).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3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자료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제72조제4항 중 "정한다"를 "정하고,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및 재산 자료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1조(소득월액) ① ~ ② (생	제71조(소득월액)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	③		
득의 구체적인 범위, 소득월액			
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			
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	<u>정하고,</u>		
	소득월액 산정에 반영하는 소		
	득 자료 등 그 밖의 세부사항		
	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제72조(재산보험료부과점수)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	4		
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			
·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u>정한다</u> .	<u>정하고, 보험료부과점</u>		
	수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및		
	재산 자료 등 그 밖의 세부사		
	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